#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066, 2017. 9. 11.]

## [전문]

#### [워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 고]

- 1. 사단법인 대〈〉〈〉사회
- 2. 재단법인 약(▶□보원
- 3. 한◈◈◈엠에스헬스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7. 7. 21.

#### 【판결선고】

2017. 9. 11.

##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원고 목록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 기초 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피고 사단법인 대◇◇사회(이하 '피고 대◇◇사회'라 한다)는 의약품 등의 생산 진홍과 품질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약국 경영관리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약국관리 프로그램인 팜매니저(Pharm Manager) 2000(이하 'PM2000'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재단법인 약①□보원(이하 '피고 약()□보원'이라 한다)은 의약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약품정보 관련 연구 용역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한◈◈◈엠에스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약 및 건강관련 산업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수집,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2)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청구금액란에 3,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의사들이고(이하 '의사인 원고들'이라 한다), 청구금액란에 2,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은 환자들이다(이하 '환자인 원고

들'이라 한다).

## 나. PM2000 프로그램을 통한 피고 약(▶□보원의 정보 수집

- 1) 의사가 환자에게 발행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및 용법,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환자가 처방전을 받아 이를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기재된 사항을 각 약국에 배포되어 있는 PM2000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건강심사평가원에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을 청구하게 된다.
- 2) 2011. 1. 28.경 당시 피고 약(▶□보원의 A, B은 각 약국에 저장된 처방전 관련 정보를 피고 약(▶□보원에 자동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PM2000 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에 포함한 후 각 약국으로 하여금 PM2000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위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된 환자들의 정보가 피고 약(▶□보원의 중앙서버에도 저장되었다.

#### 다. 피고 회사와 피고 약♪□보원 사이의 정보 공동사용계약 체결

- 1) 피고 약(▶□보원과 피고 회사는 2010.12.30. 정보 공동사용 및 상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약(▶□보원은 PM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생년월일,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등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 2) 이 사건 정보 중 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는 2011. 1. 말경부터 2012. 2. 2.까지는 실제 성명과 번호로, 그 다음날부터는 암호화되어 피고 회사에 각 제공되었다. 그리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① 최초 정보 제공 시인 2011. 1. 말경부터 2014. 6. 경까지는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중 홀수 자리와 짝수 자리를 각 다른 암호화 규칙에 따라 영어 알파벳으로 치환한 다음 양끝 2자리에 임의의 알파벳으로 잡음(노이즈, noise)을 추가하는 방식의 양방향 암호화가 이루어졌고(이하 '1기 암호화'라 한다), ②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방식인 SHA-512 방식으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었다(이하 '2기 암호화'라 한다). 그리고 ③ 2014. 10.경 이후부터 2015. 1.경까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성명, 생년월 일, 성별로 환자를 특정한 후 이를 일방향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암호화되었다(이하 '3기 암호화'라 한다).

## 라.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 1) 2014. 7. 28. 피고 약(▶□보원 및 피고 약(▶□보원의 C, 직원으로 근무하던 A, B은 2011. 1. 28.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PM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국 9,000여 개의 약국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2011. 9. 30.부터 2013. 12. 11.경까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송받아 수집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현재 이 법원 2015고합5752호로 재판 계속중이다.
- 2) 2015. 7. 23. 피고 약(▶□보원 및 피고 약(▶□보원의 C, D, 피고 약(▶□보원의 A, 피고 약(▶□보원의 E팀 직원이던 F, B, G과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H, I도「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환자의 조제정보 등을 처리하거나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이법원 2015고합665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 마. 관련 규정

피고 회사가 피고 약(▶□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던 중인 2011. 3. 29.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되었는바,「개인정보 보호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본조신설 2013. 8. 6>

-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0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 497. J, 1680. K, 1696. L의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 1310. M, 1313. N, 1314. O, 1315, I, 2171. P 등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님이 육안상 명백하거나 승소금 입금계좌의 계좌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소송위임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또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송참여사이트에 등록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소송참여사이트상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참여사이트 등록 사실만으로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일부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 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만1574 결정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장에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소송위임 여부에 관하여 다투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5. 11. 3., 2016. 10. 7., 2016. 12. 1., 2016. 12. 2., 2017. 3. 16., 2017. 7. 20. 소송대리권증명현황표와 함께 일부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을 재착 제출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879명의 원고들 중 1513명의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2017. 7. 20. 원고 497. J, 1680. K, 1696. L의 소송위임장이 모두 제출되었다), 나머지 366명의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참여사이트(Q)를 통하여 소송위임약정에 동의한 다음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승소금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생성된 명단과 위 원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계좌로소송 비용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으로보인다(피고 회사는 원고 2171. P의 소송위임장에는 다른 사람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일부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에도 승소금 입금계좌의 계좌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소송위임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2171. P의 소송위임장의 서명란에 'R'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P과 R(원고 2176. S의 개명전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은 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P은 이 사건 소송참여사이트를통하여 소송위임에 동의한 다음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원고들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원고들 중 1인의 계좌를 승소금 임금을 위한 계좌번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위임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사회, 약(●□보원이 PM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주체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질병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한다) 제49조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하는 행위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제공받았는바, 이 역시「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피고들의 주장
- 가) 피고 대◇◇사회의 주장

PM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들의 정보를 수집, 관리한 것은 피고 약(▶□보원과 피고 회사이고, 피고 대 〈╳〉사회는 PM2000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일 뿐 이 사건 정보 수집에 관여한 바 없다.

- 나) 피고 약(□□보원, 피고 회사의 주장
  - (1) 피고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의사면허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는 실제 의사면허번호가 아니라 피고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일련번호임에도 원고들은 실제 의사면허번호와 피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상 의사면허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비교, 대조하여 의사인 원고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제공된 이 사건 정보에 의사인 원고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
  - (2) 피고 회사가 피고 약(▶□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는 암호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통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가 되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의약품의 처방정보, 조제정보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 피고 약(♪□보원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제공은 허용된다.
  - (4)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받아 통계분석에 활용한 것일 뿐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 대◇◇사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78 내지 8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약(▶□보원은 2001. 1. 11. 피고 대◇◇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피고 약(▶□보원은 피고 대◇◇사회로부터 PM2000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탁받아 PM2000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배포 등을 담당해온 사실, 피고 약(▶□보원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대◇◇사회의 대표자는 피고 약(▶□보원의 대표자를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대◇◇사회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피고 약(▶□보원의 이 사건정보 수집 및 제공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대◇◇사회가 PM2000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 PM2000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의 개발 업무는 피고 약(▶□보원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② 피고 대◇◇사회와 피고 약학 정보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 약(▶□보원이었던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 약(▶□보원 및 그 임직원들만이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사회가 피고 약(▶□보원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정보의수집, 제공, 이용 등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사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피고 약♪□보원,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 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 68 내지 7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PM2000 프로그램 사용계약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는데, 위 사용 계약에는 피고 약(▶□보원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약사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용계약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PM2000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동전송 프로그램에 따라 피고약(▶□보원의 서버에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 약(▶□보원이 약국 운영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PM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것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약사들이 PM2000 프로그램을 통한 피고 약(▶□보원의 정보 수집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이 PM2000 프로그램 사용계약 내용에 기재되어 제시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약(▶□보원이 약사들을 속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의 입법 목적이 피싱 등의 수법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피고 약(▶□보원의 정보 수집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여부

# 가) 개인정보의 개념과 법리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 즉,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identifiable)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암호화 등 적절한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이는 식별성을 요건으로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나제3자에게 제공되더라도「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다면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여전히「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원본 데이터의 특성, 비식별화된 정보가 사용된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 비식별화 조치에 활용된 기법·세부기술의 수준,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 및 방법, 이용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력·경제력에 따른 재식별화 능력,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재식별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유무,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비식별화된 정보와 외부 정보 사이의 결합 가능성,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공받은 자의 관계, 비식별화된 정보와 외부 정보 사이의 결합 가능성,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제공받은 자의 관계,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나) 의사인 원고들이 처방한 처방정보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는 2011. 1. 말경부터 2012. 2. 2.까지는 실제 성명과 번호 그대로 피고 회사에 제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2016. 4. 26.자, 2016. 11. 29.자 각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사인 원고들의 실제 의사면허번호와 피고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상 의사면허번호를 비교하여 이사건 정보에 이 사건 의사인 원고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제12, 96, 97, 102, 103호증, 을다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약(▶□보원의 직원인 G은「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이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면서 4-6자리의 의사면허번호뒤에 0을 붙여 8자리로 만든 다음 8자리의 숫자를 미리 정해진 순서로 섞어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의사면허번호를 같은 형태로 저장해 온 사실, G은 의사면허번호에 관한 복호화 함수를 만들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의사인 원고들의 의사면허번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

므로, 위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이후의 이 사건 의사인 원고들의 처방정보가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이전에 제공된 실제 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에 이 사건 의사인 원고들의 성명 및 면허번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사인 원고들이 처방한 처방정보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환자인 원고들 및 의사인 원고들이 환자로서 처방받은 처방정보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여부

## (1) 개인정보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18, 27, 31, 37, 47, 83, 88, 99, 102, 109호증, 을다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 T팀의 I은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피고 약(▶□보원의 직원 B과 환자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0. 5. 11. I은 B에게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증 홀수 자리와 짝수 자리를 각 다른 암호화규칙에 따라 영문으로 치환한 다음 양끝 2자리에 임의의 영문자 를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의 1기 암호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약(▶□보원은 2011, 1, 말경부 터 2014. 6.까지 1기 암호화 방식으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피고 회사에 제공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피고 약(▶□보원의 서버에 접속하여 누적된 자료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피고 약(D□보원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I에게 부여되어 있었고. I은 이 사건 정보의 수집 및 통계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 사실, ③ 피고 약●□보원의 직원인 G은 2011. 9. 2. 건강심사평가원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암호화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할 수 있는 복호화 함수를 만든 다음 이 를 피고 약❶□보원의 서버에 저장한 사실, ④ 암호화가 부실하다는 안전행정부의 지도에 따라 2014. 6.경부 터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 방식인 2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하게 되었는데, 피고 약●□ 보원의 위 G은 2014. 6.부터 2014. 8.까지 피고 회사에 2기 암호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대응되는 1 기 암호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칭 테이블을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한 사실, ⑤ 2014. 10.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3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하였는데, G 은 2015. 2.경 피고 회사에 3기 암호화 방식으로 생성된 환자의 고유번호와 이에 대응 되는 2기 암호화 방식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칭 테이블을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에서 정보 수집 및 통계처 리 업무를 전담한 I은 이미 1기 암호화 방식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기 암호화 방식은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암호화 규칙이 단순하여 복호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정보 중 1기 암호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쉽게 복호화하였던 점, 피고 약◐□보원 서버에는 1기 암호화 방식 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복호화 함수가 존재하였고 피고 약(▶□보원과 피고 회사의 관계 및 암호화에 관하 여 논의해 온 상황에 비추어 피고 회사에서 복호화 함수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분석 자료를 생성하는 회사로 피고 약.●□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기 이전 에도 암호화된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해 왔는바 암호화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활용이 제도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되거나 일부에 있어서는 강 제되기까지 하는 기본식 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홀・짝수 자리 에 따라 영문자와 1:1로 대응하는 일종의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알고리즘이 적용된 1기 암호화 방식은, 식별하지 않으면서 특정만 하 는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여 특정한 값에 대한 다양한 추론을 통해 쉽게 복호화할 수 있어 개인이 식 별될 우려가, 위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피고 약♪□보원과 공유하는 피고 회사에서는 직원 1인에게 전적으로 그 접근과 관리가 맡겨져 있어 이렇게 암호화된 이 사건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할 위험마저 잘 통제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1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이 사건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반면, 2, 3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이 사건 정보의 경우에는 이론상 양방향 암호화에 비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식별 기술에 해당하는 일방향 암호화(one-way encryption 또는 hash)를 사용하여 난수를 생성하는 기법 등이 적용됨으로써 암호화의 기술적 수준이 높아 피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복호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 약(▶□보원으로부터 1기 암호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와 2, 3기 암호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와 2, 3기 암호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매칭 테이블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자료를 생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암호화된 정보를 재식별화할 경제적 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 또는 본사가 실제로 복호화 등을 시도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적절한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할 것이다.

# (2)「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여부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를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고(제18조 제1항), 다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4호).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건강 등에 관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 제공하는 등으로 처리할 수 없다(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나) 먼저 피고 약(▶□보원이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약(▶□보원이 수집한 이사건 정보의 정보주체는 처방을 받은 환자들인데, 갑 제9, 11, 39, 9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약(▶□보원이 환자들로부터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고. PM20000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달리 법령에서 피고 약(▶□보원이 이 사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 약(▶□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인 2011. 9. 30. 이후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 정보는 피고 약(▶□보원의 정보 수집과 동시에 암호화되었는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비식별화 조치는 이 사건 정보 수집행위의 위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 약(▶□보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행위 및 피고 회사의 정보 수집, 활용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1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이 사건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나아가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 약(▶□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4, 95, 10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단순히 피고 약(▶□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피고 약(▶□보원에 이 사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피고 약(▶□보원의 서버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 본사에 여전히 식별 가능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해

당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 역시 피고 약(▶□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약(▶□보원이 2, 3기 암호화 방식의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제공받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계작성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를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였으므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 약(▶□보원이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1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이 사건 정보를 피고 회사에 제공한 행위와 피고 회사가 1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나, 2, 3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손해 발생 여부

## 가) 정신적 손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 되었는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참조). 그리고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 제공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종국적으로는 해당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제3자에게 열람되거나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의 주체인 환자는 처방전을 제출하면서 약국의 정보수집에 동의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 약(▶□보원의 정보수집에 대해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제3자인 피고 약(▶□보원이나 피고 회사에 의한 열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10호증, 을다 제10, 11, 13,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약(▶□보원이 수집한 이 사건 정보는 피고 약(▶□보원을 거쳐 피고 회사에 제공된 이외에 다른 분야로 유출되어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제3의 범행에 활용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의약품에 관한 통계분석결과를 생산하여 이를 기업, 정부기관 등에 제공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정보를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외에 이사건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이지만, 이 사건 정보 중 위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제서 재식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약(▶□보원, 피고 회사를 제외한 제3자가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관리 체계나 사업 목적 등에 비추어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집합물과 결합하기 전에는 제3자가 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 제3자가 열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정보는 원외 조제의약품 시장을 추정분석한 통계자료 작성에 활용되었을 뿐 마케팅, 스팸메일 전송에 사용되거나 신분 도용에 사용되어 이 사건 정보의 주체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④ 피고 회사의 본사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들의 가공된 이 사건 정보는 전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원고들은 언론보도 나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등을 통하여 피고 약(① 보원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계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점, ⑥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원고들의 정보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소 취하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원고들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피고 약(① 보원에 의하여 수집 되고 피고 회사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법정손해배상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가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39조 제1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3호) 제2조에 의하면 위 제39조의2는 시행일인 2015. 7. 24. 이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2011. 1. 말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약(▶□보원,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최민석 신세희